

국 토 교 통 부

시정요구·통보

제 목 발파암 깎기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미 이행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부산광역시(○○본부)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100%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4. 12. 15. 부산광역시 ○구 ○○로 000, ○○빌딩 000호에 있는 ○○종합건설(주) (대표자 ○○○)와 1개사¹⁶³⁾와 ‘○○권 ○○○ 의·과학 일반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’를 총 공사부기금액 19,631,498,000¹⁶⁴⁾원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. 17. 착공하여 2017. 12. 15.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.

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4. 11. 12.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대로 ○○○○타워(○○동)에 있는 (주)○○○○○○○관리공사(대표자 ○○○)와 1개사¹⁶⁵⁾와 총 용역부기금액 1,374,438,000¹⁶⁶⁾원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1. 17. 착수하여 2017. 11. 23. 완료예정으로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, 2016. 1. 19.)」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, 특정 공종의 삭제, 공정계획의 변

163) 충청남도 ○○시 ○○로 000, 0층(○동)에 있는 ○○건설(주) (대표자 ○○○)

164) 2016. 12. 14. 총공사부기금액이 21,356,940,000원으로 변경되었음

165) 부산광역시 ○○○구 ○○동로 ○○ ○○○○○○원 000호에 있는 (주)○○○○○ (대표자 ○○○)

166) 2016. 5. 2. 총 용역부기 금액 1,441,861,000원으로 최종변경 계약됨.

경, 시공 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473호, 2015. 6. 30.)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“실정보고”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.

한편 위 공사의 설계서에는 발파암 9,566m³중 8,532m³는 정밀진동제어 발파로, 161m³는 소규모진동제어 발파로, 554m³는 중규모진동제어 발파로, 319m³는 브레이커로 깎는 것으로 되어있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(○○본부)에서는 위 공사의 시공자가 발파암 깎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정밀진동제어 발파로 시공하지 않고 도저(66톤, 작업비율 90%)와 브레이커(작업비율 10%)로 시공한 경우 실제 시공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하였어야 했는데도, 시공자가 절토 비탈면 보강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발파암 깎기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도저(66톤, 작업비율 90%)와 브레이커(작업비율 10%)로 시공한 발파암 깎기 8,532m³에 대하여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실제 시공방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.

이를 비롯하여 【표】와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발파암 깎기 물량 9,566m³를 실제 시공방법인 도저(66톤, 작업비율 90%)와 브레이커(작업비율 10%)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발파암 깎기에 대한 공사비 185,801,000¹⁶⁷⁾

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.

【표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발파암 깎기 공사비 현황

(단위: 원, 제경비 포함)

공종	설 계			실 제 시 공			공사비 차액 (B-A)
	수량 (㎡)	단가 (원/㎡)	공사비(A)	수량 (㎡)	단가 (원/㎡)	공사비(B)	
합 계	9,566		270,001,000	9,566		84,200,000	185,801,000
○ 직접공사비			185,002,642			63,508,674	121,493,968
정밀진동 제어발파	8,532	20,661	176,279,652	-	-	-	176,279,652
소규모진동 제어발파	161	12,707	2,045,827	-	-	-	2,045,827
중규모진동 제어발파	554	8,178	4,530,612	-	-	-	4,530,612
발파암 깎기 (브레이커)	319	6,729	2,146,551	-	-	-	2,146,551
리퍼(90%)+ 브레이커(10%)	-	-	-	9,566	6,639	63,508,674	63,508,674
○ 제경비			84,998,358			20,691,326	64,307,032

※ 부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시정] 발파암 깎기를 실제 시공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공사비 185,801,000 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

[통보] 발파암 깎기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현장대리인과 건설공사 사업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각각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

<관련자>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: (주) ○○○○○○공사 ○○○

현장대리인 : ○○종합건설(주) ○○○

167) 부산광역시에서 원가계산 자료로 활용되는 표준품셈에 66톤 도저의 운전시간 1시간당 발파암 파쇄량(㎡/hr)과 기계·운전경비 산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표준품셈에 기술되어 있는 장비 중 현장 투입장비와 유사한 32톤 도저의 운전시간 1시간당 파쇄량(㎡/hr)과 기계·운전경비 산정기준에 현장 작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출한 단가산출서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비교한 금액